

제 호

전담의료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